

“
경고하고 오는
사고는 없습니다
”

[수도권지사]

건설안전점검실 031-910-4120
운영관리팀 031-910-4101

[강원지사]

건설안전점검실 033-259-5210
운영관리팀 033-259-5201

[충북지사]

건설안전점검실 043-640-5410
운영관리팀 043-640-5411

[영남지사]

건설안전점검실 054-440-5630
운영관리팀 054-440-5610

[호남지사]

건설안전점검실 062-603-5810
운영관리팀 062-603-5801

[건설사고신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봄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서

2021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기관 소개 및 주요 업무

| 기관 소개 |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라 '20.12월에 새롭게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건설단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까지의 안전을 통해 국민행복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비전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경영 방침	안전 최우선	소통화합	상생협력	창의혁신
전략 목표	현장중심 사망 및 중대사고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	자율과 창의의 경영혁신

| 주요 업무 |

건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안전성 / 안전관리계획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및 건설 중 정기안전점검 결과 적정성 검토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하안전관리(굴착공사 영향성 검토 및 지반침하 등) 업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운영
시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주요 시설물의 진단 및 성능평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평가와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관리 내진성능 / 기반시설 관리제도 운영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관리지원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관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재건축 및 수직중축 적정성 평가 등
안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보급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설물 안전 해외전파 및 협력

해빙기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및 점검 사항

| 개요 |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기간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보통 2월~4월로 법적으로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됨

| 중점관리 사항 |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발생 여부
-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 등의 안전설치 여부
- 공사장 내 및 주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 여부
- 공사장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짐 발생 여부
- 공사장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 여부
- 공사장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 발생 여부
- 흙막이 가시설 배면 침하로 지중 매설물(상수관, 가스관 등)의 손괴시 2차 재해 위험 존재 여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관 리 주 체	
점 검 자		점 검 일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O, X	내용(위치,상태)	
1) 일반사항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지하매설물 조사 여부			
• 깎기비탈면의 적정구배 준수 여부			
• 측구, 토공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및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 동절기 공사 시공계획서 작성 및 준수 여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O, X	내용(위치,상태)	
2) 흠막이 지보공			
• 시공상세도에 의한 시공 및 작업 준수 여부			
• 용접부위 및 부재 접합, 교차부 상태 및 부재 손상변형, 부식 변위, 탈락 등의 이상 유무			
• 수평버팀대(strut)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및 계측항목, 주기, 기준치 초과 여부			
• 토류판 물림 길이 및 배면 공극 여부			
• 배면토사 충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여부			
3) 거푸집 설치 상태			
• 기 설치된 동바리, 거푸집 판넬 등의 존치 상태 및 후속작업 진행 여부			
• 거푸집 내부 빙설, 오물 찌꺼기 등의 제거 유무			
• 간결철선, 폼타이 등의 거푸집 고정 철물류의 녹제거 유무			
4) 동바리 설치 상태			
• 구조검토에 따른 조립도의 적정성			
• 허용응력에 대한 구조검토의 적정성			
• 하중의 지지상태			
• 이음 및 재료상태			
• 상부 U-Head의 편심 유무 확인			
• 수평 연결재 및 동바리 설치 상태 적정성			
•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적정성			

|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O, X	내용(위치,상태)	
5) 건물 외벽 비계 설치 상태			
• 작업후 시공 상세도에 의한 변경 부위 점검 여부			
• 비계설치 하단부에 지반 침하로 인한 들뜸, 고임대 변형부위 이상 유무			
• 비계 연결 철물의 이완상태 확인 후 정비 여부			
• 공사중 비계의 파손부위 및 수직, 수평불량 부위 재시공 여부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의 적정성(400kg이하)			
•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의 일치여부 및 시공의 적정성			
6) 비계 다리 설치 상태			
• 비계다리 연결부위의 지반 침하 및 휨 발생 여부			
• 비계다리 연결 철물의 이완 상태 및 정비 여부			
• 비계발판 및 미끄럼막이 연결철물 결속상태 보완			
7) 공사장 주변 및 건설 기계 장비			
• 흙, 눈 등으로 은폐된 웅덩이, 터파기 개소 방지 여부			
• 건설기계류(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등)의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 각종 자재 및 잔재, 쓰레기 등의 정리정돈 상태			
• 크레인 권과방지 장치, 과부하방지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여부			
• 장비의 전도 방지 조치 여부			
• 작업대차 사용시 구조계산서,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

(O : 상태양호, X : 조치필요)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O, X	내용(위치,상태)	
8) 공사장 주변 기초지반			
• 맨홀, 공동구, 지하구조물 등 깊은 터파기 구간 경사면 지반 연약화로 붕괴 여부			
•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발생여부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9) 공사장 절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 여부			
• 지속적인 낙석 발생 여부			
10) 공사장 굴착 사면			
•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부석 및 나무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 여부			
• 산마루 측구 설치 여부			
• 굴착면 적정 구배 준수 및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로설치 여부			
• 굴착 단부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등의 적치 여부			
• 높이 5m마다 최소 2m 이상의 소단 설치 여부			



안전점검표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자료실에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직접 다운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

제도 소개

목적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이행을 점검 및 확인하여 건설사고 예방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점검 대상	• 50억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 현장
점검 항목	•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주요 공종 - 일반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제출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확인 - 가설 구조물 : 굴착/흙막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안전시설 및 추락예방조치 관련 시공 상태 - 건설 기계 : 타워크레인, 이동크레인 및 천공/항타기 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현장점검 조치사항 입력방법

회원가입

-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접속 www.csi.go.kr 접속
- ② 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③ 아이디 생성(중복확인 필요) 및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 입력
- ④ 사용자 유형 건설업체로 선택
- ⑤ 승인관리자 가입 사업자등록증 첨부 / ⑥ 사업자 인증
- ⑦ 등록 신청 등록신청 클릭 후 콜센터(1588-8788)로 승인요청



<회원가입방법>

조치사항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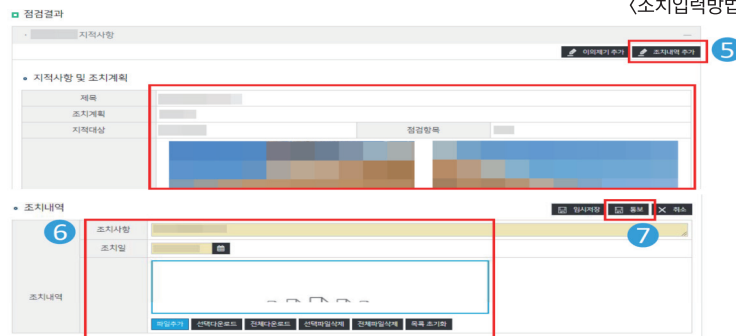
-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로그인
- ② 현장점검 메뉴 선택 상단 현장점검, 좌측 점검 대상 메뉴 클릭
- ③ 점검명 선택 점검명 클릭하여 현장점검 결과 화면 이동
- ④ 현장점검 결과 확인 하단의 점검결과(지적사항 등) 확인



- ⑤ 조치내역 추가 지적사항 확인 후 조치내역 추가
- ⑥ 조치내역 입력 조치사항, 조치일, 조치사진 등 입력
- ⑦ 조치내역 통보 임시저장은 점검자에게 통보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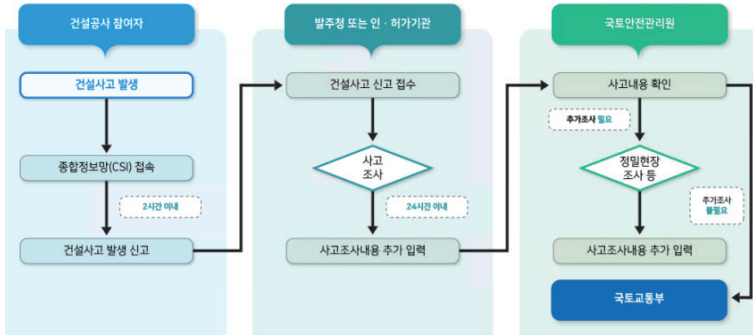
<조치입력방법>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작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창고 ※ 법 시행('20.12.10.)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작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 비계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상세도, 비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제출 절차	<pre> graph TD A[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 B[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B --> C[안전관리계획서 검토] C --> D[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D --> E[건설공사 착공] E --> F["(부적정시)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및 제출"] F --> G[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G --> H[안전관리계획서 재검토 결과 통보] H --> I[건설공사 착공] </pre> <p>※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시 동일 절차로 진행</p>

건설사고 신고 방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건설사고 감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사고 발생을 인지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신고 주체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사고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2시간 이내) 자체 사고 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24시간 이내) 신고 방법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 / 조사
신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대상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 건설사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신고 절차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명 : KISCON 등록 공사명 일치 필요(미등록시 수기 입력) 사고발생 일시 / 장소 피해상황 :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사고신고 사유 / 사고발생경위 수신자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선택 신고자 소속기관으로 가입 후 신고가능하며, 비회원 신고시에도 소속기관은 최초 등록이력이 있어야 함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및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의 정의, 적용범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 등으로 구성
중대재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종사자의 유해·위험 관련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의 생명·신체 관련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 및 50명 이상의 단위사업은 '22.1.27.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4.1.27.부터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되는 제3자도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하고, 소속 기관에도 벌금형 부과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 부상·질병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